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3210
----------	------

발의연월일 : 2026년 1월 일

발 의 자 : 강 성 삼 의원

1. 제안이유

징계대상자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였더라도 접수 준비 과정에서 시한을 도과하여 징계요구 및 회부를 하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5일의 기간을 30일로 조정하여 접수·회부 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징계요구 시한 조정(안 제97조제2항)

3. 검토의견

가. 입법 필요성

- 현행 규정의 한계: 현행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97조제2항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징계요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무적 어려움: 5일이라는 기간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징계요구서를 작성·제출하기에 물리적으로 매우 촉박함.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실질적인 준비 기간은 더욱 단축됨.

- 제도적 실효성 확보: 짧은 시한으로 인해 명백한 징계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요건(기간 도과) 미비로 징계가 무산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징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함.

나. 입법 적정성

-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의원 징계에 관한 세부 절차를 회의규칙을 스스로 정할 권한이 있음.

다. 법적 타당성

- 「지방자치법」 제101조에 따르면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음.
- 징계 시한을 두는 목적은 ‘의원 신분의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는 데 있음. 현행 5일은 징계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었음. 구체적인 기간 설정에 있어서는 입법의 실효성과 제반 여건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구분	하남시의회(현행)	하남시의회(개정안)	국회법(제157조)	행안부 표준규칙안
징계요구시한	5일 이내	30일 이내	10일 이내	5일 이내

※ 경기도의회는 징계요구시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음

라. 결론

- 본 개정규칙안은 징계 대상 사실을 인지하고도 촉박한 시한(5일)으로 인해 징계요구를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징계권 행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에서 적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됨.